

## 5. 보건·환경

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
			관계부서
소비기한 표시제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품 등의 ‘유통기한’ 표시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통기한: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·판매가 허용되는 기한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품 등의 “소비기한” 표시제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“소비기한”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</li> <li>- 2023.1.1. ~ 2023.12.31.까지 ‘유통기한’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으며,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되는 제품은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함</li> <li>-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상담 업무 실시 (☎1533-0639 / 평일 09:00 ~ 18:00)</li> </ul> </li> </ul>	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(‘23. 1. 1.)
			위생과 식품안전팀 (8082-5272)
특정 용도의 경유자동차 신규등록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신규등록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신규등록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추가)어린이통학버스</li> <li>- (추가)화물을 집화·분류·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</li> <li>-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</li> </ul> </li> <li>※ 기존 등록 차량은 사용 가능</li> </ul>	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(‘24. 1. 1.)
			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 (8082-6341)